

의안번호	2206666
의 퇴 인	민형배의원
회 답 일	2025.1.13.
추 계 번호	24D5997
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6조의2 (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선거), 제55조(선출) 및 제56조(선거구 선거관리) 신설	–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주민의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선거로 선출함 –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,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함 –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에 관한 사무 중 선거구선거사무를 수행할 선거관리위원회는 「선거관리위원회법」에 따른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하되, 선거구가 둘 이상의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함	의무규정
2	안 제26조의5 (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소환) 신설	– 주민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소환할 권리를 가짐 –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는 제56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함 –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주민소환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「주민소환에 관한 법률」의 시·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	의무규정
3	안 제64조(지방검찰청 검사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) 신설	– 이 법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당선된 사람을 보좌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검찰청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직 인수위원회(이하 “인수위원회”라 함)를 둘 수 있음 – 인수위원회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까지 활동할 수 있음 –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 및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–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른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함 – 그 밖에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	재량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6조의2(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선거), 제55조(선출) 및 제56조(선거구선거관리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26조의5(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소환) 신설	
3	안 제64조(지방검찰청 검사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) 신설	

2. 상세 사유

□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(안 제26조의2, 제55조 및 제56조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투표용지 및 선거벽보 인쇄 등의 비용 등으로 한정
 - － 개정안 부칙 제2조는 개정안에 따른 최초의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선거를 2026년 동시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다만, 투표용지 및 선거벽보 인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선거가 최초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었을 당시(2010년) 증가된 비용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, 이에 관한 자료가 부재하여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¹⁾

1) 지방선거에 관한 비용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·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분담하고 있으므로, 이에 대한 종합적인 비용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함. 참고로,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함

□ 지방검찰청 검사장 소환(안 제26조의5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관한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되나, 주민소환이 실시될 건수를 예측하기 어렵고, 유사 사례²⁾가 존재하지 않아 현 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□ 지방검찰청 검사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(안 제64조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검사장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위원들의 활동비 및 운영비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구체적인 업무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추계가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강아름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아름	02-6788-4664	krm7839@nabo.go.kr

2) 개정안에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주민소환에 관하여는 「주민소환에 관한 법률」의 시·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, 시·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적이 없음